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제7-5판)

2020. 4. 21.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본 대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유입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I. 대응원칙	1
II. 사례정의	2
III. 검역대응 절차	3
1. 검역조사	4
2.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5
3.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7
4.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9
5. 격리병상 배정 및 이송	11
6. 확진환자 신고체계	12
7. 기타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13
8. 접촉자 관리	14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16
2. 특별검역신고서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17
3. 검역확인증	19
4.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20
5. 기초역학조사서	21
6. 격리통지서	22
7.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25
8.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26
9. 감염병 발생 신고서	27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28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2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33
3.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37
4.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40
5.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45
6. 항만검역소 하선자 검역절차	46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체류 외국인 의무설치 앱 관련 단계 명확화 - 입국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후 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역학조사서 서식 변경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기재 사항을 상세하게 구분 • 특별검역신고서, 격리통지서 변경 -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한 손목 안심밴드 착용 및 거부시 시설격리 조치 안내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검역소 외국인 승객 발생 시 조치사항 - 시설격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지정 시설격리 배정 및 이송을 위한 협의 - 관할 지자체로 시설격리 대상자 발생 사실 통보(자가격리자는 제외)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변경 -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한 손목 안심밴드 착용 및 거부시 시설격리 조치 안내

I. 대응 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중후군’ 을 적용하여 대응
 - 「검역법」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 (대응 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통보용, 제 7-4판)에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II. 사례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진환자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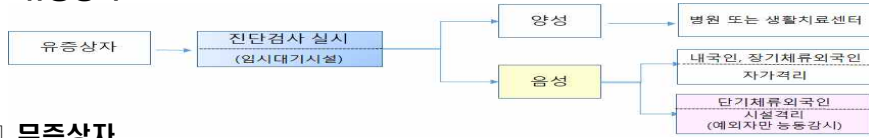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국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 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III. 검역대응 절차

□ 유증상자



□ 무증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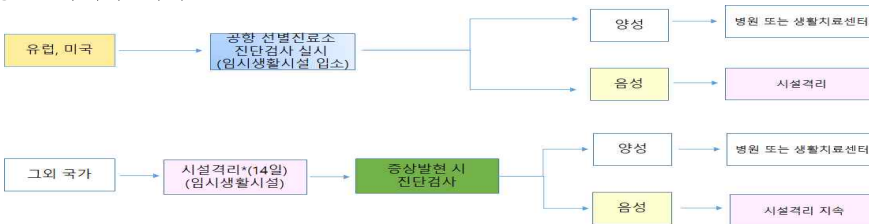
① 내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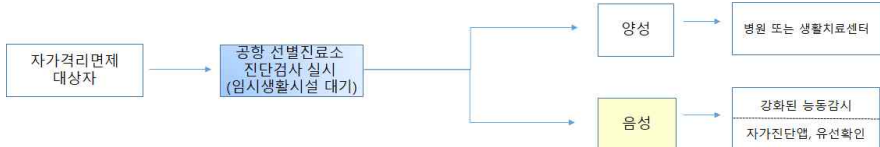
② 장기체류 외국인



③ 단기체류 외국인



* 격리 면제 대상자 :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받은 입국자 등
 - 비자 A1(외교), A2(공무)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을 받은 경우 등



I 검역조사

- (공통사항)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수행
 - 검역관은 감시기간(14일) 내 국내 입국자 전수 대상 발열확인(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서식 1] 확인, 격리주의 안내문 배부[부록 1]
 - ※ 선박의 경우, 선의(船醫)가 있어도 입국자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확인
 - *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입국 전용 심사대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진행
 - * 선박의 경우 감시기간 상관없이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입국자의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직장명(학교명) 등 작성 확인
 - (관련 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특별입국절차 완료에 따른 조치) 연락처 및 입국자별 관련 앱 설치 여부 확인 후 다음의 조치 수행
 - 연락처 및 앱 설치 확인 시 → 검역확인증 발급[서식 3]
 - 시설격리 미동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서식 4] 작성 후 법무부로 송부
 - * (법무부) 앱 미설치자 및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자체로 정보 공유
 - (일일상황 보고) 해당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으로 보고

②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승무원, 선원 포함)
 - 서류 간소화(유증상자 검역조사서 생략, 필요시 역학조사서 간소화)
 - 검역관은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 항공기(선박)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해운 대리점)와 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 고열(38℃초과) 지속,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 등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 관할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필요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5) 후 진단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 격리관찰 수행
 - * 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
 -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는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국립검역소 역학조사 인력 활용
 - ※ 역학조사 시 개인보호구(Level D) 착용
 - ※ 선박의 경우, 대상자 증상 상태를 판단하여 미하선 시 선내격리 가능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참고자료] (대한의사협회)

구분	분류기준
경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고위험군의 기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 7-4판)

- 연령 : 65세 이상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③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 유럽발 입국자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귀가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외국인)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생활 시설에서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임시 대기
 - * 09:00~19:00에는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 ※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이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임

<격리 대상자의 격리기간>

○ 격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이며, 다음날에 격리해제 됨
 (예시) 4.1일 입국자 : 4. 1 ~ 4.15일까지 격리기간이며 4.16일 0시에 격리 해제

2) 미국발 입국자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귀가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09:00~19:00에는 선별진료소에서, 19:00~09:00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 ** 공항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는 시설에서 ‘시설격리’로 수정
 - ※ 격리통지서는 입국일로부터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통지서 발부 시까지 유효

3) 그 외 국가 입국자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임을 안내,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 격리통지서는 입국일로부터 지자체에서 별도 격리통지서 발부 시까지 유효
-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시기간(14일) 동안 시설격리 대상임을 안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후(시설 입소시 동 앱 삭제 후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조치(법무부에서 격리통지서* 발부)
 - * 공항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를 시설에서 ‘시설격리’로 수정

4)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

○ 입국자 전수 앱 설치 확인

- (농동감시)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결과나오기 전까지 임시검사 (생활)시설에서 대기)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필수 설치한 후 입국 가능
 - ※ 선원의 경우 앱 미설치시 검역확인증 미발급 조치 및 하선 불가
 - ※ 승무원, 선원의 경우 유증상일 경우에만 진단검사 실시
 - ☞ 격리면제자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격리통지서 회수

< 격리 면제 대상자 >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 ③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 비자 타입이 A3(협정)인 경우(주한미군) 입국 직후 소속부대에서 인계하여 자체 검사 및 입국 후 14일간 격리 실시함

4)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1)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등)
- (검체종류) 상기도(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가래)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 *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채취
- (하기도 검체) 객담이 있는 경우 채취(객담 유도 금지)
-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 착용(보건용마스크(KF94 등급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 ※ 전신보호복 위에 일회용 긴팔가운 착용 후 검체채취 마다 가운과 장갑만 교체 가능
⇒ 착·탈 소요시간 단축하고 전신보호복 부적정 착용 사례 방지
- (진단검사)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및 제주검역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자체 검사 수행, 그 외 검역소는 가까운 지역거점검사센터에 검사 의뢰(서식 7)
 - 진단검사 기관은 매일 진단검사 현황을 진단검사관리총괄팀, 검역관리팀으로 일일보고(메모보고) 수행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2) 검역소 격리시설(실) 임시 격리관찰

- 검역소 격리시설(실) 또는 지정 임시격리시설에서 격리관찰 실시
 - ※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 공·항만에서 격리(검사)시설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착용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
- 당해 검역소에서 격리시설(실) 부족 상황 발생시에는 인근 검역소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함
 -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다수의 임시격리 관찰이 필요한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으로 자체 격리시설의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사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 선박의 경우, 대상자가 경증이고 미하선 시 선내격리 가능
- (검역관) 각 검역소 격리시설(실)로 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검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
 - *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8)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같음
 - ** 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 (격리관찰자)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관찰
 - * 격리관찰 중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시·도 담당자(병상배정팀)에게 격리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및 이송
 - ** 격리관찰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3]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지역거점검사센터는 의뢰한 검역소에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후 접촉자관리팀, 검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검사결과(양식은 별도 송부) 보고
 -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해당 안내문 배부, 감시기간 내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해당 앱 설치 확인 후 귀가조치
 - ※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입국자의 경우 퇴소 전 발부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 (단기체류 외국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후 시설격리
- (검사 양성)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검역관리팀으로 유선보고 및 관찰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
 - * 검역소에서 최초 양성 판정 시 질병관리본부 검사분석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 결과판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자체로 결과 통보

5)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및 이송

1)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검역관)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①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②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시·도 격리병상 배정 담당자(병상배정팀)에게 격리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 확진자 발생 시 병상배정 체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름

<검역단계 확진자 발생 시 치료병상 배정절차 안내>

- 중증·고위험군(내·외국인 포함) : 국립중앙의료원
- 내국인 확진자 :
 - (인천 인근* 거주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 담당자가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배정
 - *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대전, 강원 (시·도 환자 발생과 병상 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 (원거리 거주자 및 거주지 불분명) 검역소에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044-202-3628, 3626)에게 연락하여 안산 등 인천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 검역소 담당자는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사실을 각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 담당자에게 통보
- 외국인 확진자 : 중수본 생활치료센터반 환자관리 담당자(044-202-3628, 3626)에게 연락하여 파주 등 인천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 생활치료센터 배정 시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생활치료센터 입소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산, 파주 외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안내를 할 수 있음

- (시·도 담당자) 지역 내 격리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담당자 번호를 검역소에 공유

2) 유증상자 이송 및 인계

- (의료기관 이송) 의료기관에 유증상자 이송 및 도착시점 사전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 (유증상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유증상자 인계(인계 시 의료진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설명)
- (보고체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이송 등 조치결과 보고(메모 보고 등)*, 관할 시·도에 명단 통보*
 - * 기초역학조사서 파일첨부

6) 확진환자 신고체계

- (확진환자 신고) 최초인지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 신고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 역학조사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Fax 또는 e-mail)
 -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는 반드시 확진 당일 신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 [서식 9] 감염병 발생 신고서
 - 확진환자를 신고한 검역소는 환자가 이송된 격리병원과 격리병원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대상으로 관리 요청 공문 발송
 - * 공문발송 : 환자발생 사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격리병원에서 환자 신고), 그 외 환자관리 등 요청

[환자발생신고]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유선전화 : 043-719-7979, 7790, 7878, 7789
- E-mail : kcdceoc@korea.kr, FAX : 043-719-9459

7 기타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
-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진단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 (폐기물 처리) 환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및 검사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부록 4] 및 위생관리 철저히 수행
 -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기격리 권고
 - * 검역지원인력 : 개별 건강관리 카드 작성, 전담검역관이 직접 하루 2회 (출·퇴근시)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하여 기록(보관 유지)

8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 ※ 접촉자 조사는 확진환자 판정 시에 시행하되, 역학조사관이 확진 전 사전에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
- 접촉자 :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5조의 2)
- (역학조사관) 운송수단 내 접촉자 범위 설정

구 분	조사대상자	접촉자 범위
항공기내	탑승객	근접좌석탑승객* 및 담당 승무원
	승무원	담당 구역 전체 탑승객과 그 외 서비스를 수행한 접촉 탑승객, 접촉한 동승 승무원
	조종실 승무원 (기장, 부기장 등)	조종실 동석자, 접촉한 동승 승무원, 그 외 이동 동선에 따라 접촉한 탑승객
선박 내	탑승객, 승무원	역학조사관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의심환자 이외 전원 접촉자로 간주

* 근접좌석탑승객(총 7열)이란, 항공기 내 의사환자 좌석 해당 열(row) 전체 탑승객과 의사환자 좌석 앞·뒤 3열 전체 탑승객을 의미함

- (검역관) 좌석배치도, 승객·승무원 명단을 참고하여 항공기 내 근접 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명단 작성[서식 10]
- ※ 근접좌석탑승객 및 승무원 등 접촉자 명단은 **확진 시 통보**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 (접촉자 명단 통보) 관할 시·도에 접촉자 명단 통보 및 중앙방역 대책본부(역학조사팀, 검역관리팀)에 접촉자 명단 보고
- * 통보: 공문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접촉자 명단 입력

< 앞면 >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 편명 Flight No.(航空)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 (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전화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天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 및 도시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and cit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和城市名称。	
한국 내 학교명 Name of school in Korea (在韩校名)	한국 내 직장명 Name of company in Korea (在韩所属单位名称)

본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 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 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0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 Self Diagnosis Mobile APP</p>  <p><안드로이드·아이폰용> Google Play/APP Store</p>	<p>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p>  <p><안드로이드 다운> <안드로이드용> Google Play <아이폰용> APP Store</p>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Self Diagnosis Mobile App Installation Instructions

< 한국어 >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사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입국 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ENGLISH >

People with A visas (Diplomat (A-1), Government Official (A-2)) or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install the Self-Diagnosis Mobile App and record thei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arrival in Korea. Personal details entered in the "Self Diagnosis App" should coincide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Travel Record Special Declaration. If there is a change to your personal details, you should update the information in the App. You may receive SMS reminders to submit your daily health status on the app for 14 days after entry to Korea. Please record you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day.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안내
Guide on the Installation of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 한국어 >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ID : CORONA

< ENGLISH >

All Koreans and long-stay Foreigners should mandatorily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abide by the guidelines for self-quarantined persons including submitting their health status on the "Self-Diagnosis App" for a period of 14 days.

If you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ermission during your home quarantine period or otherwise fail to comply with quarantine guidelines, you will be required to wear a safety band on your wrist. If you still refuse to comply, you will be ordered to quarantine at a facility. (*You may be required to pay for the use of the facility.)

검역 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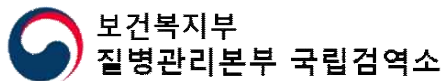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년 월 일
(yy) (mm) (dd)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 ①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 []
- ②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 ③ 격리거부, 격리비용 납부거부 등 시설격리 조치 불응 []
- ④ 기타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 _____ 검역소장 (직인)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서식 5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4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국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시 또는 기재)			
2.1 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2 입국 시 경유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1.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 - - -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출입함 (출입한 공항:) 공항 밖 체류시간: () <input type="checkbox"/> 출입안함		
2.3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선박명 ()		


3. 임상증상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주관적/소 미안/비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비호흡기 증상
3.1.1 발현 일시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3.1.2. 증상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주관적 호소 <input type="checkbox"/> 미인지 발열 (체온: 1차- ℃ 2차- ℃ 3차- ℃)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기침 <input type="checkbox"/> 가래 <input type="checkbox"/> 인후통 <input type="checkbox"/>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두통 <input type="checkbox"/> 근육통 <input type="checkbox"/> 오한 <input type="checkbox"/> 콧물/코막힘 <input type="checkbox"/> 후각저하(후각상실) <input type="checkbox"/> 미각저하(미각상실)
		<input type="checkbox"/> 구토 <input type="checkbox"/> 복통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3.2 증상 소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증상소실일자:)	<input type="checkbox"/> 증상소실 (증상소실일자:)
3.3 해열제 복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미지막 복용시간: 월 일 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흡연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input type="checkbox"/> 예 (기저질환:)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6 임신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주)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급성호흡곤란증후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흉부방사선촬영: <input type="checkbox"/> 예 (소견:)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input type="checkbox"/> 단독(1인) <input type="checkbox"/>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명, 관계)
4.2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환자이름 / 관계: 접촉날짜 및 장소: ,
	<input type="checkbox"/> 급성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현지의료기관 방문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 유증상자 <input type="checkbox"/>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해외방문 () <input type="checkbox"/> 확진환자 접촉	임상증상 <input type="checkbox"/> 폐렴 <input type="checkbox"/> 발열+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증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검역소 조치사항(중복기입)	<input type="checkbox"/> 시설 격리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input type="checkbox"/> 보건교육		
검체채취 구분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검역소 내 검체채취 <input type="checkbox"/> 기타()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서식 6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시설 <input type="checkbox"/> 병원	격리 기간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p>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 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조치'함을 통지합니다.</p> <p>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p> <p>격리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부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5호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기격리 중 격리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됨(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202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긴급상황센터	주무관	김영기·김보경	043-719-9082, 9302

Notice of Isolation/Quarantine

Name		Date of Birth	
-------------	--	----------------------	--

Type of Quarantine/ Isolation <input type="checkbox"/> Home <input type="checkbox"/> Facility <input type="checkbox"/> Hospital	Duration	Effective from _____ to _____
	Place of Quarantine / Isolation	Name
		Address

You are receiving this notice because you are ordered to quarantine as a person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the pathogen of an infectious dise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2(2), 47.3, 49(1)14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During your quarantine, you may not leave your quarantine area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this action. You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ules set by the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f you have objections to the quarantine action, you may file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suit within 90 days of receiving this notice.

※ Failure to comply with this action may result in:

-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up to 1 year or a fine up to 10 million won according to Article 79-3, subparagraphs 3 through 5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Civil damages**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n the event that your failure to comply constitutes violation of law and causes damage to the state due to further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or additional measures of disease control/prevention; and/or
- (For foreign nationals) **Revocation of visa or residence permit, deportation, and/or prohibition of entry** according to Article 11(1), 46(1), and 89.5 of the Immigration Act.

Date: 202__ / ___ / ___

**Directo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ffiliation	
Position	
Name	
Contact	

隔离通知书

姓名		出生日期	
隔离区分 <input type="checkbox"/> 居住地 <input type="checkbox"/> 设施 <input type="checkbox"/> 医院	隔离期间		
	隔离场所	名称	
		地址	

根据《传染病预防及管理法》第42条第2款，第47条第3号，第49条第1款第14号，您属于传染病疑似传染者，须接受隔离。

隔离者未经疾病管理本部长或居住地地方自治团体长的许可，不得擅自离开隔离场所，不得在隔离场所内随意走动。必须遵循疾病管理本部长或居住地地方自治团体长规定的遵守事项。

如对隔离措施有异议，可在收到本通知之日起90日内提出行政审判或行政诉讼等。

※ 不遵守本隔离措施时

- 根据《传染病预防及管理法》第79条之三,第3号至第5号，将予以刑事处罚(一年以上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 违反隔离措施的事实属于非法行为，因追加防疫措施及感染扩散等原因导致国家损失时，根据《民法》第750条，当事人须承担民事损害赔偿赔偿责任。
- 此外，根据《出入境管理法》第11条第1项，第46条第1项，第89条第5号，不遵守隔离措施的外国人，将予以取消签证或滞留许可、强制出境、入境限制等处罚。

202 年 月 日

疾病管理本部长



部门	
职位	
姓名	
电话	

서식 7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3.>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담당자 성명			
	주 소	담당자 연락처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ml)]					
처리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align-items: center;">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재 → 성적서 발급 </div>					
의뢰인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 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 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서식 9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지역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거주지 불명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아르보
【신종감염병중후군(중상 및 경우:)】	
제2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수두(水痘) []홍역(紅瘧) []콜레라 []장티푸스
제3급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수막구균 감염증 []한센병
[]상충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피노넨내성장내세균속군증(CRE) 감염증	
제3급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브리셀로페열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瘧疾) []프프기무시증 []렐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종우극출혈열(野痘候群出血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명기열 []규열(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두버저(類鼻瘤) []치쿤구니아열	
[]중증급성호흡기소관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 진행중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외래 []입원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환자 []의사환자 []병력제보유자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뢰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환자의 소속기관명	
추정 감염지역 []국내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작성·작성명 (학·교명)	최종접촉일	의·환자부
	띠어쓰 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 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내국인 항목 'N' 선택 시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 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OO병원	2015063 0	Y
2	홍OO	1971010 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OO학교	2015063 0	N
3	MOO	2001010 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2[의료진 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 41234	021234 1234	OO기업	2015063 0	N
4	홍OO	2001010 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 41234	021234 1234	무직	2015063 0	N

<국문>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포함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ex: 4월 1일 입국하신 분은 4월 15일 24: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실시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 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 실시**
- ✓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이동 중 다른 정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 ✓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격리자 생활수칙

-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

발행일 2020.04.2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입국하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인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거주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http://url.kr/9dqRor

구글 플레이



http://url.kr/5rntzH

앱 스토어



http://url.kr/f7dmWwS

ID : CORONA | 다운로드 : 스토어*에서 '자가격리자' 검색 *안드로이드(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04.21.



For Entrants to Korea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

For COVID-19 prevention, you are required to enter quarantine on the day of your entry and remain in quarantine for the next 14 days in accordance with the **Quarantine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or example, if you arrived on 1 April, you are required to home quarantine (self-quarantine) until 24:00 of 15 April)

Precautions for Arrival at Airport

✔ **Foreign nationals for short-term stay** should go into isolation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t their own expense.

- If you are a foreigner on a short-term visit who boarded from Europe or US, you will be tested at an open walk-thru screening station at airport and enter quarantine/isolation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Other foreigners on a short-term visit will enter quarantine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and be tested if symptoms occur during quarantine.

Note) Exempted from quarantine* should undergo the diagnostic tests and be under active surveillance in which designated public officials check on their health conditions for 14 days.

*Exempted from quarantine: Entrants acquiring pre-approved waiver throu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ose holding A1 (Diplomat), A2 (Government official) visa or acquiring "self-quarantine exemption document" in advance of entry issued by the Korean Embassy.

✔ **Foreigners who are long-term** should go into self-quarantine in their homes.

- If you are a foreigner on a long-term stay (i.e., living in Korea) who boarded from Europe, you will be tested at an open walk-thru screening station at airport and wait for the result at a temporary living facility. If the result is negative, you will be allowed to leave the facility and enter home quarantine.

- Asymptomatic foreign nationals for long-term stay from the United States should undergo diagnostic tests within three days of self-quarantine.

- Asymptomatic entrants from all parts of the world except for Europe or the United States should Under go the diagnostic tests when any symptom appears while being quarantined in homes.

*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 Must wear a facemask all the time and minimize contact or conversation with others.

✔ When heading to home, using your private car or should use specially designated airport limousine bus and KTX (designated cars).

*You should directly go home and dropping by other places is not allowed.

✔ Right after arriving home, should dial to local health centers and inform them you are under quarantine.

✔ Should move to the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ies by specially designated cars.

✔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ndatorily.

Android



<http://url.kr/9dqRor>

Google play



<http://url.kr/5mtzH>

App store



<http://url.kr/f7dmWs>

Usage of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All Koreans and foreign nationals for long-term stay are mandated to install the 'self-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follow self-diagnosis and self-quarantine rules for 14 days. (ID : CORONA) (If there is a change in your phone number or in the location of your actual residence, you must notify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

✔ Follow self-diagnosis and self-quarantine rule for 14 days.

April 15, 2020



For Entrants to Korea

Instructions for Quarantine Subjects

Guideline for Quarantine Subjects

✔ Guideline for Quarantine

- Refrain from going out of the isolation place to prevent infection from spreading
- Self-quarantine subjects should stay in a separate place and common rooms are frequently ventilated
- If it is not possible to stay alone in a separate place, ask help from local health centers
- In case outing is necessary, such as medical appointment, make sure you contact to local health center first
- Avoid sharing your personal items (personal towels, eating utensils, cell phones, etc.) with your family members or housemates
- In case of symptoms such as fever, cough, respiratory difficulties, immediately report to the local health center

✔ Guideline for Families and Housemates of Quarantine

- Family members or housemates refrain from contact with self-quarantine subject as much as possible
- When contact with the subject is unavoidable, wear a facemask and maintain a 2-meter distance
- Closely monitor health condition of self-quarantine subject
- Frequently clean commonly touched surfaces including tabletops, door knobs, bathroom fixtures, keyboards, and etc.
- If your work involves coming into contact with many people or if you work in a publicly used venu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hool, private classes, preschool, kindergarten, social welfare facility, postpartum care center, and healthcare institution), you need to limit or reduce your work capacity as best as possible to minimize contact until the end of the quarantine period.

Guideline for Quarantine Subjects

- ✔ Wash your hands thoroughly with soap and running water for over 30 seconds
- ✔ Cover your nose and mouth using your upper sleeves when coughing
- ✔ Do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 unwashed hands
- ✔ Frequently ventilate your rooms
- ✔ Wear a mask in case any symptom appears including fever, or respiratory symptom, or you visit a medical institution

If you do not fully comply with those stated above, you will face up to 1 year in prison or a 10-million won fin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In case the infectious disease spreads or additional infection control measure is implemented including facility closure due to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violators may be subject to claims for damages. Also, they could face cancellation of visa (residency status), deportation, or ban on reentry into Korea, etc.

April 15, 2020

부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20.4.2.(목) 기준>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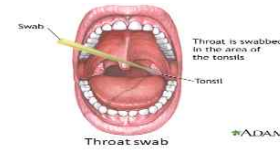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 구인두도말물 · 비인두도말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도말물 동시 채취	·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 가래	(용기) 멸균 50ml 튜브 (검체량) 3ml 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검체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8]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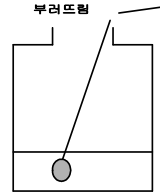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상기도 채취 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를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 (4℃ 유지)

<가래 채취 방법>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시, UN 3373 표시, 방향 표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 3중 포장용기 예시 >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및 제주검역소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 유전자(PCR) 자체 검사 수행, 그 외 검역소는 가까운 지역거점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 ☞ [서식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환자 최초인지 검역소 담당자가 검사기관(지역거점검사센터)으로 이송,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 (검사기관) 유전자 검사 시행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검사분석팀)에서 잔여 검체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필요시 검체 재채취)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의뢰 해당 검역소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관리 총괄팀, 검역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안 내 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5.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7. This facility is a **non-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隔离者须知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需在此等待。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禁止外出。
4. 在隔离室期间，免费提供饮食。
5. 如需检疫官的帮助，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请勿在建筑物内吸烟。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务必随时在**观察室内佩戴口罩**。

부록 4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개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히 함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	-
	PAPR(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	------	------------------------------	------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Glove)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오염 방지 •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튀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Shoe covers)			
장화(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헤어캡(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확진 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 기침유도 시술 시 •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¹⁾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검역조사)		●		●			
검역(역학조사)		●		●		●	●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		●	●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		●	●
이송(구급차 운전자) ²⁾		●		●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		●		●	●
구급차 소독		●		●		●	●
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		●		●	●
에어로졸 생성 처치		●		●		●	●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		●		●	●
호흡기 검체 채취		●		●		●	●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 ³⁾		●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		●		●	
병실 청소·소독		●		●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1) 의심·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른

□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쉼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구분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착용)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⁴⁾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 ⁵⁾ (제거) 순서	1	(겉)장갑	(겉)장갑
	2	장갑 소독	장갑 소독
	3	전신보호복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신발커버(또는 장화)	후드
	5	장갑소독	전신보호복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등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 4) PAPR과 후두 착·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 5)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 (역학조사팀) 확진자의 접촉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역 관리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요청
- (검역관리팀)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및 검역 협조 요청

□ 검역조치 절차

<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시 >

1. (출입국의국인청)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사실 통보 및 정보공유

- 검역관리대상자가 출국심사 완료 후 관할 검역소에 정보* 공유
- * 출국자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국편명, 출국시간 등

2. (검역소) 검역관리팀에 공유

- 출입국의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 쪽지 등)
- * 담당자 032) 740-9207

3. (검역관리팀) 관련 부서 전파

- (역학조사·환자관리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전파
- (상황분석·국제협력팀) IHR에 근거하여 출국 국가에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통보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시 >

1. (출입국의국인청) 검역소 통보

- 입국 심사 시 검역관리대상자 중 '검역확인증' 미소지자 검역소 통보

2. (검역소) 검역관리대상자 검역 수행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절차에 따른 검역 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메모보고(수신: 검역관리팀)

□ 기본방향

- 모든 하선자(내·외국인 포함)는 감시기간 상관없이 특별입국절차 수행 및 14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하선자 중 선원의 경우 자가격리 예외자로 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한 능동감시 실시
 - * 앱 미설치자의 경우, 검역확인증 미발급 및 하선불가
 - 하선자 중 승객의 경우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후 자가(또는 시설)격리 실시
 - * 외국인 승객의 경우 관할 지자체 지정 시설격리 배정 및 이송을 위한 협의
 - ※ 지자체로 시설격리 대상자 명단 등 발생 사실 통보(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 통보됨)

□ 유증상자 발생 시

- 선내 또는 검역소 격리실에서 진단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임시격리관찰, 이동금지 명령 및 소독명령 등 행정조치
 - * 선내 격리 시 개인 선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 사용
 - 검역관리지역 입항 : 소독 명령
 - 검역관리지역 외 지역 : 소독 권고
- (음성) 임시격리관찰 및 출항시까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한 능동감시 지속
 - * 자가진단앱에 매일 건강상태 입력 필수(2회 연속 유증상 입력시 관할 보건소에 명단 통보되어 보건소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
-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소독 미실시한 경우, 소독 명령 및 이동금지 명령 시행
 - 소독완료 확인 후 이동금지 해제
 - 해당 선박이 확진자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이내 출항 시 IHR통보* 필요
 - *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검역지원과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접촉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 ※ 확진환자가 발생한 선박의 경우 감시기간 내 국내이동 불가